

2025년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추가모집)

조달청은 혁신제품 해외실증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수출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4일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5년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 사업목적 : 조달청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에 수반되는 인증·통관 등 비용 부담 경감, 법률·분쟁 리스크 해소, 언어·규제 등 수출 장벽 완화 등 애로 해소
- 사업내용 : 해외실증 시범구매 참여 기업에 대해 해외실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현지 규제조사부터 일정기간 AS까지 전후방 통합 지원
 - * 규제조사비, 법률지원, 인증·규격 취득, 통관 부대비용, 물류비, 시운전, 시험비, 납품 후 실증 과정에서의 사후관리 등 혁신제품 해외실증 관련 필요한 전 분야 서비스 대상
- 모집규모 : 4개社
- 사업기간 : 공고 후 ~ '25.11.30까지
- 모집 절차 및 선정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시작	⇒	신청·접수 마감	⇒	참여기업 선정
'25.10.14.(화)	추가1차	'25.10.15.(수) 00:00		'25.10.28.(화) 18:00		'25.11.10.(월)
	추가2차	'25.10.29.(수) 00:00		'25.11.11.(화) 18:00		'25.11.24.(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1차 모집에서 모집 규모를 충족할 경우 2차 접수 미 실시

2. 지원요건

□ 신청자격 : 아래 각 호(①, ②)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25년 혁신제품 수출선도형(해외실증) 시범구매 사업 선정기업(전년도 해외실증 선정 기업도 포함)

② e-나라도움 이용 과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 해외실증 대상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 지원 사업', 타부처 '수출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 사업기간 내에 정산(e-나라도움 활용)이 불가능한 기업은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 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 참여기업 선정 후 정해진 협약기간 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과정상 불가피한 사유 등 기한 내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산 마감 기한 10일 전 까지 관리기관에 연장 요청하여 승인 필요

□ 신청기간

- 추가 1차 : 2025. 10. 15.(수) 00:00 ~ 2025. 10. 28.(화) 18:00 까지

- 추가 2차 : 2025. 10. 29.(수) 00:00 ~ 2025. 11. 11.(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시기	비 고
1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참가신청서 및 선정 기초자료, 서비스 사용 계획서* * 서비스 이용 예정인 경우에 한함	신청 시 제출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2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4	사업자등록증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부대비용 관련 추가 설명자료(필요시)		참여기업 자체 양식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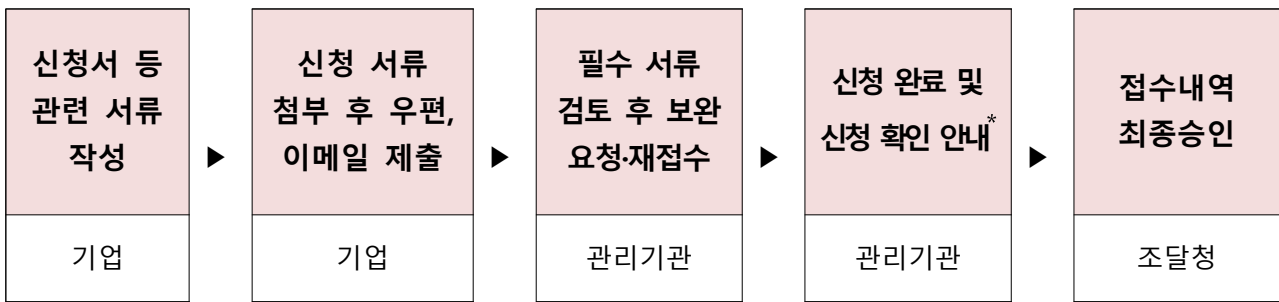
□ 신청 및 접수방법

○ 관리기관((재)한국조달연구원) 전용 이메일(export@kip.re.kr)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20 성원빌딩 3층, 한국조달연구원
(우편번호 : 06231)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만 인정

〈신청서 접수 절차〉



* 관리기관에서 검토 완료 후 개별적으로 이메일 안내

신청제한 대상

- ◆ 휴·폐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실증국가 규제조사비, 인증·규격, 통관자문·물류비, 시운전, 시험비 등 기타 해외실증 관련 납품·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참여기업 자부담 15% 포함 금액)

< 조달청 지원금과 자부담 매칭 비율 예시 >

(예시1) 서비스 사용금액이 총 1,500만원(부가세 제외금액)일 경우, 조달청이 1,275만원(85%)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이 225만원(15%)을 부담

(예시2) 서비스 사용금액이 총 3,500만원(부가세 제외금액)일 경우, 조달청이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3,000만원 중 85%인 2,550만원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최대 지원한도의 15%인 450만원과 최대지원한도 초과금액인 500만원을 부담

- 지원방법 : 사후정산(先이용 後정산)방식
 - 해외실증과 관련하여 기업이 이용 또는 이용 예정인 서비스의 적합성 및 추후 수출 연계·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평가하여 지원여부, 금액범위를 결정한 후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이 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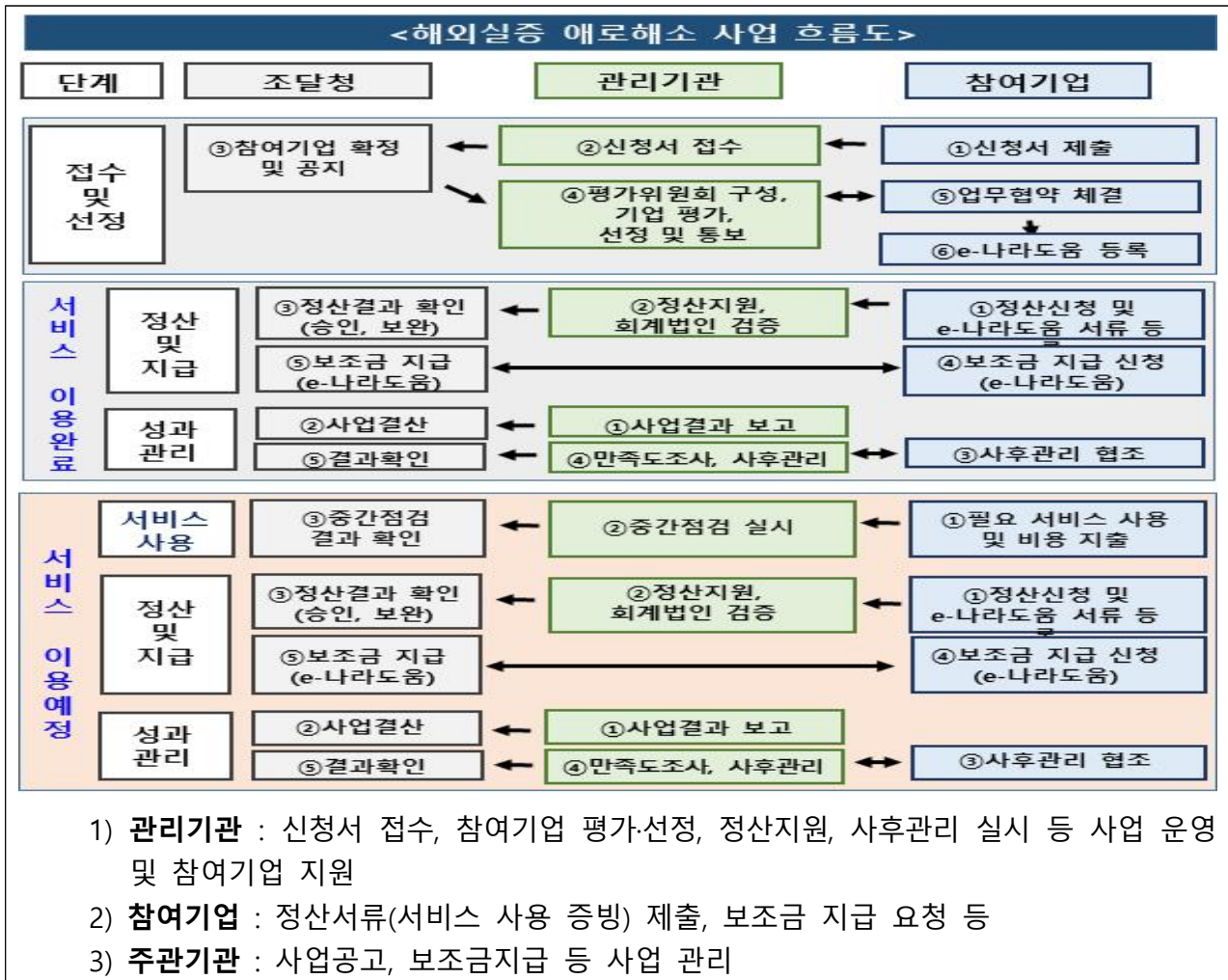
*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용금액(25년 발생한 금액)

- 지급대상 : 조달청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지출 증빙이 가능한 금액
 - 참여기업과 특수관계기업으로 확인된 수행기관 또는 서비스 수행 능력,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된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해외실증 대상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타 기관·타 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동일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해외실증 관련 서비스 예시>

①	실증 대상 국가 규제 사전조사	내용 예시	해외실증 대상 국가의 통관, 인증 등 법적 규제 등에 대한 조사 서비스 해외실증 대상 국가에 대한 사전 규제조사, 규제해결을 위한 사전 신청 및 서류 작성 등
②	인증, 지재산권 취득	내용 예시	해외실증 관련 해당 국가의 국제 규격 및 인증 취득 지원 해외인증 취득,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즈니스/기술문서 번역, 납품 시 필요한 인증·취득
③	해외실증 진출 물류·통관 자문	내용 예시	해외실증을 위한 혁신제품 운송 및 대금 지급 관련 업무 기획·실무 지원 혁신제품 운송, 해당국 법률·세무·특허 자문 및 교육 등, 계약 등 법률지원,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납품·사후 분쟁 법률지원, 통관·선적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통·번역, 환변동보험료 등
④	해외실증 진출을 위한 홍보 지원	내용 예시	해외실증 및 후속 수출에 필요한 콘텐츠 및 홍보자료 제작 소요비용 지원 해외실증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브로셔, 제품 설명서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⑤	해외실증 사후관리 지원	내용 예시	해외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해외실증을 위해 필요한 시운전, 검사시험비, 유지보수* 등 * 시범구매 테스트 중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증빙자료(예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입금증 또는 송금증, 사용보고서(표준 또는 자체), 세무산출내역서(표준 또는 자체) <정산가이드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지원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요청 서비스별 지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서비스인지 결정



4. 선정방법

□ 선정규모 : 4개社 (타당성 평가결과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지원기업 중 선정기업을 제외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기업에 선정

□ 선정절차

① (참가 신청 접수) 참여기업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종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완 여부 검토

② (신청기업 평가) 결격여부 등 확인* → 신청 서비스별 적정성 검토 후 지원 타당성 평가를 실시

* 경영상태, 부정당제재 등 결격사유 확인

③ (지원기업 선정) 타당성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조달청에서 최종 지원 대상 확정

□ 평가기준

① (서류검토 기준) 기업의 경영상태와 제재여부 등 기본 신청자격 및 결격대상 여부를 관리기관에서 검토

평가영역	평가지표	제출서류	평가방법
경영상태 등 <신청시 제출>	최근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B-이상)	적합 /부적합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해외실증 사업 선정기업	제출 불필요(해외실증 매칭 정보로 확인)	
제재여부	부정당제재 여부	별도 제출 불필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적합 /부적합
중복수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별도 제출 불필요 (국제협력담당관실 협조)	적합 /부적합
	수출바우처 사업 중복수혜 여부	별도 제출 불필요 (KOTRA·중진공 협조)	적합 /부적합

② (적정성평가) 해외실증 사업과 연관성, 서비스 비용 적합성을 기업 자체 증빙·작성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평가지표	지표설명	평가방법
해외실증 사업 연관성	▪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인가?	적합 /부적합
서비스비용 적합성	▪ 지출(지출예정) 비용이 실제 실증과정에서 발생(발생예정)하였으며, 비용이 적절한 금액 범위내인지?	적합 /부적합

③ **(타당성평가)** 기업의 증빙·작성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 활용 효과, 수출 연계 가능성, 수출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평가지표		지표설명	배점
서비스 활용 효과		- 서비스 활용 방안 및 결과(계획) ※ 기업이 이용(이용예정)한 서비스가 단순 일회성*인지, 성장 및 수출 확대로 연계되는 건설적 서비스**인지 검토 * (예시) 단순 홍보 팸플릿 제작 / ** (예시) 해외 인증 취득	30
수출 연계 가능성		- 해외실증사업 이후 추가 수출 가능 여부 ※ 실증 대상 기관에 추가적인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지 검토(MOU 체결 여부, 기관 만족도 조사, 추가 납품 의향 확인 등)	30
수출 확산 가능성		해외실증사업 이후 타 기관(지역)에 대한 수출로 확산 가능성 평가(후속 진출을 위한 기업의 준비 및 노력)	30
해외실증사업의 안정적 수행		- 해외실증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중인지 확인 ※ 실증 과정에서 잦은 계획변경 여부, 협업기관과의 협조 정도	10
가 점 (최대 5점)	해외조달 시장 진출 유망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우대	3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우대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창업기업” 대상	3
	현지 수출 유관기관 협업	- 실증 대상국가에 소재한 해외수출 지원 유관기관의 사무소*등과 협업 또는 협업 계획시 우대 (현지 네트워크 등 체계적 활용으로 실증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수출 등 연계) * 코트라(무역관), 코이카(사무소), 무역협회(해외지사), 중진공(해외지부) 등	3
	해외실증 선정 연도	- 당해연도(‘25년) 해외실증사업 선정기업 우대 ※ ‘24년 선정기업도 지원사업 신청은 가능	2

※ [주]

- 1) 매회차 접수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해외실증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기업만 신청 가능(해외실증 취소 기업은 미해당)
- 2) 평가기준일은 매회차 접수시작일 전일로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3) 검토사항별 증빙자료는 접수 시 제출자료 이외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4) 모든 제출서류는 매회차 접수시작일 전일 기준 유효 기간 내에 있는 서류만 인정함

④ **(지원기업 선정)**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5. 정산(보조금 지급) 및 성과 관리

□ (정산) 관리기관에서 정산가능 여부, 범위 확인

※ 관리기관-참여기업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정산일정 및 추후 성과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

○ (참여기업) 관리기관에 정산서류(증빙자료 포함) 제출

○ (관리기관) 참여기업이 제출한 거래증빙 자료 검토 후, 결과를 조달청 및 참여기업에 통보

*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서류 검증 ➡ 정산가이드를 통해 증빙서류, 범위 등 사전 안내

□ (보조금 지급) 조달청에서 지급 여부 최종 검토 후 참여기업에 지급

○ (참여기업) 관리기관이 검토한 거래증빙 자료 및 서비스 사용 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업로드 후, 보조금 지급 신청

○ (조달청) e-나라도움을 통해 조달청이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

※ 지급요건 충족 여부 및 참여기업이 작성·제출한 서비스 사용 보고서를 검토하여 판단

□ (성과 관리) 해외실증 사업 완료시 참여기업은 성과보고서* 제출

* 실증 일정 및 주요 활동, 사용기관 의견, 수출연계 및 확산 가능성 등 포함

6. 유의사항

◆ 지원금의 인정 범위

- ① 지원금은 관리기관 및 회계전문기관의 검토 이후 정산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검토 과정에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정산 신청시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정산 불가합니다.

◆ 참여기업의 의무

- ① 선정 이후 참여기업은 청렴서약서(운영지침 별지 4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 상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조달청 및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금년도 및 차년도 조달청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 실증 애로해소 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정산 대상 서비스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았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③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 취소, 국고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년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운영지침」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담당자 문의처

소속	이름	유선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지원센터	장인경	02-6951-4255
	강영웅	02-6951-4568
	박나민	02-6951-5449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김민섭	042-724-7121
	김동건	042-724-6415

붙임1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참가신청서			
기업명	(국문)	대표자 (생년월일)	(. . .)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소재지	본사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장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홈페이지주소			
사업 담당자	소속부서명 : 직위 : 성명 : 사무실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e-mail주소 :		
해외실증정보	해외실증 제품		
	해외실증 국가		
	해외실증 기관		
	해외실증 프로그램명 및 협업기관명		
구분	서비스 1	서비스 2	서비스 3
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금액	※ VAT 제외 금액, 자부담금 포함 금액		
총 신청금액	※ VAT 제외 금액이며, 자부담금이 포함된 총 서비스 비용 합계 기입		
당사는 조달청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에 참가하고자 관련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조치(사업참가 제한, 선정제한, 지원금 환수 등)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 (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신청기업 기초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평가 기초자료		* 다수의 서비스를 이용(이용예정)했을 경우 서비스별로 작성
이용 서비스		
서비스 비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현황	□ 서비스 활용 목적(사용 일정 기재: '25.00.00) ○ 서비스 특성에 맞추어, 결과물 도출을 위한 과정에 대한 단계별 또는 월별(시간순) 진행 절차를 구분하여 작성	
서비스 이용효과	□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성장 및 수출 확대) ○ 서비스 유형, 사용기간, 규모,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업 진척 수준에 맞는 효과* 제시 *예시: 신청 서비스를 통한 판매 매출, 인증서 취득, LOI 등	
수출연계 가능성	□ 해외실증사업 이후, 실증 대상 기관 추가 수출 연계 서비스 활용 계획 ○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대상 기재 ○ (예상 성과) 서비스 활용을 통한 예상 성과 작성	

수출확산 가능성	□ 해외실증사업 이후, 타 기관(지역) 수출 연계 서비스 활용 계획 ○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대상 기재 ○ (예상 성과) 서비스 활용을 통한 예상 성과 작성
해외실증사업의 안정적 수행	□ 해외실증 사업 계획 및 운영 ○ 실증 과정에서 계획 변경 여부 기재 ○ 실증시 협업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사항 작성
현지 수출 유관기관 협업 (가점해당시 작성)	□ 현지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업(계획) ○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회의 개최 및 실질적인 논의 내용 작성
정산증빙자료	(예시) 거래명세서(견적서), 세부산출내역서, 송금확인증 등

※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평가하지 않음

붙임2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서비스 사용 계획서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서비스 사용 계획서>

혁신제품명					
물품식별번호			기업명		
해외실증 기관명		설치 장소		시범 사용기간	
서비스 명					
서비스 이용기간	2025년 월 일 ~ 월 일		협약체결일	2025년 월 일	

소요예산 (VAT별도)	서비스비용 금액	(원)
	정산 요청 금액	(원)
서비스 내용	지원받을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서비스 활용계획	서비스 특성에 맞추어, 산출물 획득을 위한 단계별 또는 월별(시간별) 진행 절차를 기술	
산출물 활용계획	서비스 산출물의 향후 활용 계획 작성 *산출물 활용 계획에 대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상 성과	서비스 활용 예상 성과에 대한 내용 작성 *수출, 해외실증 사후관리 등 서비스 활용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예상 산출물, 정산 증빙자료	서비스 이용 완료 후, 관리기관에 제출할 산출물 및 증빙·정산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상기와 같이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진행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주)○○○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관리기관은 필요 시 서비스 사용 계획서에 관한 수정 및 관련 상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가능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 귀중

본인은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 · 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 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3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 조달청 관계기관(한국조달연구원, 지자체 등),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조회 목적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조달청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산업부 등 공공기관, 수행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등 ·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 대상 기관에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조사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조달청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한국조달연구원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KTNET ▶ 한국조달연구원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신용조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조달청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수행사 등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한국조달연구원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사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 조달청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수행사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 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 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에 제공하여,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와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KTNET 무역정보 활용·제공 동의

제공·조회 목적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 이용시 거래지원 및 편의제공 ▶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등 거래선 확대 지원 ▶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 무역사기 방지를 위한 공정 무역환경 조성 등
무역정보 활용·제공 항목	▶ 업체별 취급품목 or 품목별 업체정보 * 취급품목(품목분류번호, 품명), 업체정보(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 업체별 직·간접 수출입 실적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 ▶ 기타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전자무역문서 항목별 정보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KTNET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ex. 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무역진흥기관 : 무역관련 행정기관, 무역협회,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 ▶ 국내외 바이어(품목별 업체정보에 한함) ▶ 공공/민간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기타 상기 무역정보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자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붙임4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개 인 (신 용) 정 보 수 집 · 이 용 · 제 공 · 조 회 동 의 서

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 귀중

본인은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목적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 · 이용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 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지자체, 지역혁신기관) ▶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관련 중진공 주관 사업 안내,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담당자명 :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